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4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정호·이수진·최기상

박희승 • 전진숙 • 이연희

윤후덕 • 정성호 • 임미애

허종식 · 이훈기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·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· 송전망 설치 불필요,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 에 대한 "보상"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 안과 달리 "확대"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,

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·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 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 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

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(안 제46조).

법률 제 호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 제목 중 "확대"를 "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포함한다)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"를 "포함한다)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·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"를 "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	제46조(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
·경제적 편익 <u>확대</u>) ① 산업	·경제적 편익 <u>지원</u>) ①
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	
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	
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	
사회적·경제적 편익(분산에너	
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	
전시설 · 송전망 설치 불필요에	
따른 비용 절감, 사회적 갈등	
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	
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	
·경제적 이익을 <u>포함한다)의</u>	<u>포함한다)에</u>
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	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
다.	<u>원을 하여야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<u>분산에너지사</u>	③ <u>지원의 절차</u>
업의 사회적·경제적 편익 확	와 방법에 관하여
<u>대를 위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